

 국토교통부		보도설명자료	
		배포일시	2020. 10. 15.(목) / 총 1매
담당 부서	부동산평가과	담당자	• 과장 신광호, 사무관 염광은, 주무관 노운용 • ☎ (044) 201-3426, 3427
보도일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표준지공시지가는 지적도에만 의존하지 않고, 현장조사·위성도면 등을 통해 정확하게 조사되고 있습니다.

< 보도내용 (서울경제, '20.10.15) >

- ◆ 과세기준 표준지공시지가, 엉터리 데이터 썼다
 - 일제강점기 때 만든 연속지적도 등을 활용하여 지가·재산세 등 산출 오류

- 표준지 공시지가와 관련하여 토지의 형상, 도로접면, 고저 등 토지 특성에 대한 조사는 지적도 등 공부상 자료 뿐 아니라, 위성도면, 지리정보시스템(GIS,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) 등 현황자료를 함께 확인하고, 반드시 현장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.
- 특히,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·평가 과정에서 지적도와 다른 자료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실체에 부합하는 토지특성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.
- 또한, 공시지가 결정 전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·반영하고 있으며, 공시지가 결정 후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염광은 사무관(044-201-342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